


사회적기업 지점 등록 안내

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

I 인증서 재발급

○ 사회적기업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설립 및 폐업

- 지점은 본점과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유지
-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지점에 미포함

【 제출 서류 안내 】

-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[서식1]
 - ※ 정관 변경 신고 사항이 없더라도, 지점 등록을 위해서 본 양식 이용
-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설립 및 폐업 관련 회의록 (이사회 등)
- 사회적기업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)
 - ※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<지점에 관한 사항>에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등기
-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사업자등록증
 - ※ 사업자등록증 구분코드(등록번호 두 번째 번호)
 - 비영리(사단·재단) 법인의 지점: 82
 - 영리법인의 지점: 85
- 지부(지점·분사무소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

II 접수처

접수처	연락처	접수 방법	주소
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	전화번호: 031-697-7723 팩스번호: 031-697-7761	방문 및 우편접수 (등기 송부)	(13292)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 딩 7층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인증지원팀

<서식1>

※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 상 '관련서식'에서 다운 가능

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		처리기간
		10일
기 관 명		
소 재 지	(전화번호 :)	
대표자 성명	(생년월일 :)	
정관 변경사유		
변 경 일 자	인증번호	제 - 호 (사회적기업 인증번호)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 신고를 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		
※ 구비서류		수수료
		없 음
1. 정관개정 사항(신·구조문대비표) 1부. 2. (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·비영리민간단체·협동조합·사업단 등) 이사회 등 회의록 (공증) 1부. 3. (민법상 사단 및 재단·법인·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사회적협동조합·사회복지법인·공인법인) 주무관청 정관 변경 허가(인)서 1부. 4. 신 정관 1부.		